

대법원 2012. 6. 14 선고 2012다2171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2. 6. 14 선고 2012다21713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12. 2. 2 선고 2011나31937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4. 5 선고 2010가합6537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A 주식회사

피고, 상고인 B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. 선고 2011나31937 판결

판결선고 2012. 6. 14

주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이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부동산의 소유자와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그 조정조서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, 그 조정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는 자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(대법원 1999. 2. 24. 선고 97다46955 판결,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2000다11584 판결 등 참조).

그런데 원심은, 피고가 주식회사 C(이하 'C'이라 한다)을 상대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C이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(원심판결에는 '재판상 화해'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임이 명백하다)이 성립되어 그 조정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가 C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, 피고와 C 사이의 위 소의 소송물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에 반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송물은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서 서로 소송물이 달라 위 소에서의 조정조서의 효력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,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조서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.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.

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김용덕